

## 학부모 회 선거 안내서

### 학부모 회(Parent Association: PA<sup>1</sup>) 선거 계획

- 학부모회는 매년 5월 셋째 수요일과 6월 셋째 금요일 사이에 연례 임원 선거를 실시하여 여름방학 기간과 가을 새 학기 시작 시 PA의 활동에 공백이 없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선거를 지원할 후보 추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학부모회 임원회는 반드시 봄학기에 속성 선거절차 일정을 잡아야 하며, 일반 회원 전원에게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수업일 기준) 이전에 선거 일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속성 선거 회의에서는 모든 후보 추천을 회의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 학교장에게는 매 학년도 4월 1일까지 학부모회 선거일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5월 1일까지 통지 받지 못했을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회 임원 전원에게 선거일시의 통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회 임원회 임원들이 7일(수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5월에 직접 회의를 주최하여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부모 회의 개최 시 OFIA로부터 회의 공고 템플릿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하여 당해 위원회가 적절한 후보 추천 및 선출 회의 공고를 제시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하는 대신 학부모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속성 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 후보 추천위원회의 역할

- 후보 추천위원회 결성절차 및 당해 위원회의 직무는 반드시 학부모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출마권유 및 후보 자격 검증, 후보 추천 회의 및 선출회의 주재의 의무가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에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두 및 문서상의 정보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 **후보 출마 요청:** 일반적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고문을 보내 연례 봄학기 임원 선거 실시의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본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선출 대상이 되는 임원회 임원직(학부모회 조례에 비-필수적 임원 직책에 관한 선거를 가을에 실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임원직에 출마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임기 제한
  4.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후보 추천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는 절차(들)

<sup>1</sup> 이 안내서에서 사용된 학부모회(PA)라는 명칭은 학부모회와 학부모 교사회를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많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선거 공고문을 배부할 때 하단에 후보추천란을 마련하여 후보를 추천한 뒤 절취,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 후보 추천 공식 마감일. (후보 추천은 선거 당일, 투표 직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후보추천 회의 실시:

1. **공지문:** 후보 추천위원회는 반드시 학부모회 회원들에게 후보 추천이 이뤄질 일시와 장소를 명시한 공지문을 보내야 합니다. 본 공지문은 반드시 당해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 10 일(수업일 기준) 이전의 날짜에 작성되어 배포되어야 합니다. 본 공지문은 이메일로 공지되어도 무방하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학생 편에 가정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도 동시에 공지문을 배포하여야 합니다. 회의 공지를 위한 샘플은 [OFIA 학부모 리더십 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2. 후보 추천 회의 순서

- **기록 담당 서기가 회의록을 기록 중인지 확인** -모든 학부모회 회의에서는 반드시 회의록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후보 추천 회의 중 발생한 모든 일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담당 서기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원을 임시 서기로 선정하여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 **환영사** - 학부모 회원 전원이 출석, 서명한 후 회의실에 착석하면 환영사를 통해 효율적인 학부모회가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미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정족수** - 최소 2 인의 임원회 임원 및 6 인의 학부모 회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8 인의 학부모회 회원이 참석했는지 확인합니다(교육감 규정 A-660, 섹션 I.H.4 참조). 개별 학부모회 조례에서는 교육감 규정 A-660 에서 지정한 최소의 수를 초과하는 정족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족수가 차지 않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후보 추천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후보 추천 개시:**
  - 후보추천회 위원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이름을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합니다.
  - 후보 추천 회의 이전에 추천된 모든 후보들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예, 후보들의 이름은 회의 공고문 하단의 절취선 부분을 사용하여 제출될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은 본인 추천이나 타인 추천이 모두 가능함을 다시 안내합니다.
  - 또한 한 가지 직책 이상의 자리에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함을 다시 안내하되, 선출직은 단 한 가지만 맡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한 번에 한 가지 직책씩 차례로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 추천을 받기 전에, 학부모회 조례에 명시된 각 직책의 임무를 읽어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회장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회장은 본 협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 기록담당 서기가 모든 후보의 이름을 정확한 철자로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후보 추천 마감:**

- 각 직책 별 후보 추천을 공식 마감하고 다음 직책의 후보 추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천할 후보가 더 있는지 총 3 차례씩 물어보고 진행합니다.
- 모든 후보 추천이 공식적으로 마감된 후에는, 선거 당일 투표 대상이 될 후보는 더 이상 없음을 공표합니다.

▪ **후보 자격 검증:**

1. 후보 추천위원회는 반드시 학교장 또는 학교장 대리인과 논의하여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모든 직책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자격사항은 해당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학부모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 의붓부모, 법적으로 지명된 보호자, 수양부모 및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 -- 교육감 규정 A-660, 정의
2. 다음에 해당하는 학부모 회원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감이나 교육감 대리인, 또는 수석 가정참여 담당관에 의해 학부모회 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
  2. 조례에서 규정한 임기 제한 규정에 걸리는 사람.
  3. 교육감 규정 A-660, 섹션 I.D.1 에 명시된 학부모회 회원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
  4.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사람.
3. 한 자녀가 금 학년도 본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자녀가 다음 학년도에 입학 예정인 경우에는 봄학기 선거에서 추가 임원직(필수 임원이 아닌)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후보 자격은 추천 받은 직후 검증되어야 합니다. 무자격자로 판별될 경우, 즉시 해당 후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선출 회의 실시:**

1. **선거일 이전:**

- **학교장에게 통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이 정해지면 반드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건물 사용허가 및 보안요원 배치 등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장에게는 4 월 1 일 무렵 통보하되, 5 월 1 일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학부모회 조례 검토:** 후보 추천위원회는 학부모회 조례가 A-660 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학부모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정기회의 중 A-660 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항목을 개정하도록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논의는 발의 직후 표결에 부친다(교육감 규정 A-660, 섹션 I.H.1 참조).
  - 알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일부 후보들의 출마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투표자격 검증 전담 교직원 배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교직원 중 선거 당일 투표 자격을 검증하고 투표 결과를 확인해 줄 인물을 선정하여야만 합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본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유의합니다.

-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유권자 검증을 위해 선정된 교직원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이 담긴 ATS 인적 사항 명단을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하여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투표 준비:**

-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 출마 마감을 선출회의 일자 이전에 별도로 날짜를 지정하여 마감할 수도 있고 선거 당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이전에 후보 출마가 마감될 경우	선거 당일 후보 출마가 마감될 경우
선출 회의 일 이전에 후보 출마를 마감할 경우, 사전에 <a href="#">투표용지</a> 를 준비하고 각 직책 별 후보자 명단을 성(姓)의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후보 마감이 선거 당일 시행될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a href="#">투표용지</a> 를 인쇄할 수 있는 복사기를 마련해 주도록 사전에 요청합니다. 이러할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선거 당일 후보 출마 마감 이후 인쇄, 복사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반드시 회원들이 각 직책 별로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샘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후보자들은 각 직책 별로 성을 알파벳 순서대로 차트 종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투표함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공고문 배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학부모회의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원선출회의 일시를 알리는 공고문을 배포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선출 회의 전 최소 10 수업일 이전 일자로 발행, 배포되어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이메일로 전송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 편으로 가정에 보내거나 우편으로도 동시에 공지문을 배포하여야 합니다. 후보 출마가 마감되었을 경우, 본 공고문에는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성명을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기재한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고 샘플은 [OFIA 학부모 리더십 페이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 조례에는 후보 출마 마감 후에서 선거 시작 이전 사이에 후보들의 출마 성명을 배포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에게는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2. 선거 당일

- **준비하여야 할 물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다음 물품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스티커, 포스트잇 등. (아래 유권자 자격 검증 부분 참고).
- 투표용지 - 복사기가 마련될 경우, 투표용지 템플릿 1 매를 준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의 수를 감안하여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번역된 투표용지는 [OFIA 학부모 리더십 페이지](#)에 있습니다.

- 출석확인용지
  - 차트 종이 및 마커펜 - 복사기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 펜 - 유권자용.
  - 투표함 -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할 경우 따로 마련
  - [계표용지\(tally sheet\)](#) - 각 직책 별로 최소 1 매씩 마련
  - [OFIA 학부모회 선거 확인서](#)
- **선거 실시**
    1. **유권자 자격 검증** - 투표 자격이 있는 학부모회 회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권장사항 - 학부모들이 학교 건물에 입장하면 방명록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권자 검증을 담당할 교직원이 학부모의 성명과 ATS 명단을 대조하도록 합니다. 학부모의 투표 자격이 검증되었으면 교직원은 학부모에게 스티커나 포스트잇 등을 주고, 선거가 시작되어 투표용지가 배부될 때 이 스티커나 포스트잇을 투표용지와 교환하도록 알려줍니다.
      - 후보 출마가 선출 회의 이전에 마감된 경우,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유권자 자격이 검증되면 바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 비 경쟁직**
      - 한 직책에 단일 후보가 출마한 경우, 회원들로 하여금 기록담당 서기가 한 표를 행사하여 해당 단일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발의하도록 알려줍니다. 해당 발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회원 한 명의 유효 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의 결과는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A-660, 섹션 I.G.1.e. 참조).
    3. **선거 - 경쟁 선출직**
      - 투표용지가 필요합니다.
      - 선거일 이전에 후보 출마가 마감된 경우,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배포하도록 합니다.
      - 선거 당일, 선출 회의 현장에서 후보 출마가 마감된 경우 후보들이 간략한 출마의 변을 발표하는 동안 투표용지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복사기 마련이 가능할 경우, 후보들이 간략한 출마의 변을 발표하는 동안 투표용지 템플릿에 후보들의 성을 알파벳 순으로 기입한 뒤 투표용지를 복사하도록 합니다.
        - 복사기를 마련할 수 없을 경우, 후보들이 간략한 출마의 변을 발표하는 동안 차트 종이에 각 후보들의 성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 빈 칸으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배부합니다.
      -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투표함은 장내 전방,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 회원들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줍니다. 후보들의 성명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 유권자들은 각 직책 별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의 성명 옆에 있는 박스에 체크합니다. 만약 빈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장내 전방의 차트종이에 모든 후보들의 성명이(각 직책 별로 성의 알파벳 순에 따라 기재) 적혀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알립니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각 직책 별 모든 후보자들의 풀네임을 제공된 투표용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부정확하게 기재되었거나 읽을 수 없게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권자들에게 알립니다.
- 투표용지 배부 시작.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가 배부되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커, 포스트잇 등이 사전에 배부된 경우, 각 스티커나 포스트잇 한 매당 투표용지 한 매를 배부하도록 합니다.
- 기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지시합니다.
- 모든 투표용지가 수거되면, 투표가 마감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회원 중 세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합니다.
  - 권장사항 – 첫 번째 자원봉사자는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어 펼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선정된 후보의 이름을 읽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는 [집계표](#)에 표시를 합니다.
- 모든 투표용지의 집계가 종료되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집계를 주관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총 투표수를 다시 세도록 합니다. 총 투표용지의 숫자가 각 직책 별로 획득한 표의 합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총 투표용지의 숫자가 회의 당일 출석한 유권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집계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집계표에 성명 이니셜을 기재하거나 서명하도록 합니다.
- 자원봉사자 중 한 명에게 각 직책 별로 선출된 후보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선출된 회장이 회장 위원회(Presidents' Council)에서 해당 학교의 대표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출된 회장에게 이와 같은 의사가 없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학부모회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회장의 영구 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학부모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추후 다양한 세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기회가 재차 있음을 알립니다.
-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들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명한 교직원과 협의하여 [OFIA 학부모회 선거 인증 양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명한 교직원은 당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입증합니다.

- 학부모회 임원 선거가 종료되면,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리더십 팀(SLT) 학부모 회원 공석을 채우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적절한 사전 공고가 있었을 경우).
- 알림: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전체에 공표할 필요는 없으나 로버트 의사규칙 (Robert's Rules of Order)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용지에 이름을 적어 넣을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출마하지 않은 후보라도 기명후보 자격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2. 선거 후 절차

- 학교장에게 OFIA 선거 인증 양식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의 원본은 반드시 투표 용지, 계표용지, 참석확인 용지 및 선거 회의 회의록과 함께 학부모회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